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6 선고 2020가단24685 판결 [매매대금반환 및 약정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

담당변호사 김효언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현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11. 13.부터 2020. 10. 2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회사’라 한다)은 2014. 8. 12.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5,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회사가 2014. 11. 12.까지 원고에게 위 5,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6,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회사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나.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전무였던 F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4. 8. 12. 피고회사의 계좌로 5,000만 원을 송금하였고, 피고회사는 2014. 11. 12.까지 원고에게 6,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못한 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증인 F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6,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C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약정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금융업에 종사하였던 피고 C을 대표로 영입하여 자금의 조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 C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, 피고회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면 피고 C도 수익을 나누어

갯기로 한 사실,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F가 피고 C에게 보고하여 피고 C이 직접 날인하거나 피고 C이 F에게 날인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동의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. 11.

1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. 10. 2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도영